#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98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노종면 · 윤종군 · 김기표

김윤덕 · 김교흥 · 문금주

소병훈・박 정・박상혁

조승래 · 허종식 · 조계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 최종보고서 및 논문, 특허 등 연구개발성과 목록에 관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성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의 원문이 유료로 이용 가능한 학술지등에 게재되는 빈도가 높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개발의 성과가 공공자산이라는 인식하에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 개발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 성된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 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공동활용을"을 "공동활용과 제3항에 따른 결과물의 게재 또는 기탁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3항에 따른 결과물의 게재 및 기탁,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 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 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
	된 논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교
	부받거나 열람이 가능한 학술
	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의 매체
	에 게재하거나 기탁하여야 한
	<u>다.</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	<u>⑤</u>
개발성과의 <u>공동활용을</u>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따른 결과물의 게재 또는 기탁
	<u> </u>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⑥</u> 제1항에 따른 조치, <u>제4항</u> 에	<u>⑦</u> <u>제3항</u>

따른 지원, <u>제5항</u> 에 따른 추적	에 따른 결과물의 게재 및 기
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	<u>탁, 제5항</u> <u>제6항</u> -
통령령으로 정한다.	